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23일, 김형동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9월 2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2024. 11. 2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3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의(2024. 12. 3.) 상정, 축조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의(2025. 2. 19.) 상정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의(2026. 4. 2.)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4. 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김형동의원)

현행법은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제조등금지물질로 지정하여 모든 용도로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시험·연구 또는 검사 목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금지물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한편, 제조등금지물질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조등금지물질이면서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금지물질의 수입 허가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조등금지물질 수입 승인을 각각 별도로 받아야 하여 규제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금지물질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등금지물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한 중복규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17조제2항제3호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한석현)

개정안은 제조등금지물질이자 「화학물질관리법」 상의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물질은 환경부장관의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수입 승인을 받지 않고도 수입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한 행정절차의 중복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국민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또한 개정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수입 승인제도가 폐지되더라도 환경부장관이 금지물질에 대하여 수입 허가를 하는 경우 환경부예규에 따라 지방환경청은 지방노동관서 장에게 의견을 조회하고 있는바,¹⁾ 현행 수입 승인 제도의 취지가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생 략

1)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3장 제한물질의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6.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 및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

가. 허가기간은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5년

나.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허가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의견 조회

다. 금지물질 사용·판매계획서 검토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금지물질 사용승인을 받은 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업체에 판매하도록 조건을 부여

6. 찬반토론의 요지

생략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8. 부대의견

없음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0. 기타사항

없음